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단277410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26.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1,160,47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D(E지구)'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39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9. 8. 8.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노무미지급금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 위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인감도장을 챙겨와 날인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개인적으로도 서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0,000,000원에서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100,000,000원, 2020. 10. 30. 원고가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198,839,525원을 제외한 나머지 91,160,475원(= 390,000,000원 - 100,000,000원 - 198,839,525원)과 이에 대한 2020. 10.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노무미지급금 확인서(갑

제2호증)’에 서명함으로써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개인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노무미지급금 확인서’는 2019년 3월부터 공사완료시까지의 미지급금이 합계 390,000,000원이라는 내용이고, “상기와 같이 미지급금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위 미지급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개인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위 확인서의 서명란 부분에는 피고의 지위가 ‘연대보증인’이 아닌 ‘확인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 이사로서 확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거나, 퇴사한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할 의사였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지지도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은희